

## 행정기관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결정 통지

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에 대하여 「지방세법」 제 1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<아 래>

번호	과세대상 소재지	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합산배제 여부	합산대상 개별종교단체명 (법인(주민)등록번호)
결정 사유					
※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16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.					

끝.

발 신 명 의 직인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      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      결재권자(직위/직급) 서명

협조자 (직위/직급) 서명

시행      처리과-일련번호      (시행일)      접수      처리과-일련번호      (접수일자)

우      주소     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      전송      /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     / 공개구분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